

# PCT NEWSLETTER

[www.wipo.int/pct/ko](http://www.wipo.int/pct/ko)

2024년 11월 | 2024/11 호

PCT 뉴스레터 한국어판은 영문판([www.wipo.int/pct/en/newslett](http://www.wipo.int/pct/en/newslett)) 중 한국어 사용자 분들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영문판에서만 제공되는 정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경우 영문 원본을 참조하십시오. 영문판과 한국어판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문판에 기재된 사항이 우선합니다.

## 사우디 지식재산기관(SAIP)의 ISA/IPEA 로서의 역할 수행에 관한 내용

지난 PCT 뉴스레터 2024/10 호에 사우디 지식재산기관(SAIP)(두글자 코드: SA)이 2024년 12월 15일부로 국제조사기관(ISA) 및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으로서의 업무를 개시한다고 안내된 바 있습니다. 이에 이어, 같은 날 발효된, ISA 및 IPEA로서의 사우디 지식재산기관(SAIP)의 역할 수행에 관한 동 기관과 WIPO 국제사무국(IB) 간 협정문이 아래와 같이 영어와 프랑스어로 각각 작성되었습니다.

<https://www.wipo.int/pct/en/docs/agreements/ag-sa.pdf>

<https://www.wipo.int/pct/fr/docs/agreements/ag-sa.pdf>

ISA 및 IPEA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우디 지식재산기관(SAIP)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CT 출원인 가이드(부속서 D 및 E를 포함하는, 2024년 12월 15일부로 발효될 변동사항들이 기재된 “Advance notice” 부분 참고(<https://pctlegal.wipo.int/eGuide/view-doc.xhtml?doc-code=SA&doc-lang=en>))<sup>1</sup>에 나와 있으며, 사우디 지식재산기관(SAIP)에 납부하는 수수료들도 PCT 수수료표(PCT Fee Tables)에 나와 있습니다.

<sup>1</sup> (역주) 해당 꽂호 안은 영문 뉴스레터 발행 당시 (2024년 12월 15일 이전) 기준의 정보입니다.

앞으로 제공될 PCT 세미나, 웨비나 및 기타 PCT 관련 이벤트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본 뉴스레터의 영문판에 제공되는 PCT 세미나 일정(PCT Seminar Calendar)을 참고하세요.

## PCT 정보 업데이트

### 국제출원료 및 조사료, 보충적 조사료, 취급료 (다수 관청)

2025년 1월 1일부터 국제출원료, 30 매 초과시 용지당 수수료, 수수료표(Schedule of Fees) 4 번 항목에 나온 전자출원 감면액(해당 시), 조사료, 보충적 조사료, 그리고 취급료의 일부 통화의 등가액이 PCT 수수료표(PCT Fee Tables)에 나온 바대로 변동됩니다.

해당 변동사항은 PCT 출원인 가이드의 아래 부속서들에  
반영됩니다(<https://www.wipo.int/pct/en/guide/>).

- 부속서 C (수리관청): AM, AP, AT, AU, AZ, BA, BG, BH, BW, BY, BZ, CA, CL, CN, CR, CV, CY, CZ, DE, DJ, DK, DO, EA, EC, EE, EG, EP, ES, FI, FR, GB, GE, GH, GR, HN, HR, HU, IB, IE, IL, IN, IQ, IS, IT, JM, JO, JP, KE, KG, KH, KZ, LR, LT, LU, LV, MD, MT, MW, MX, NI, NL, NO, NZ, OM, PA, PE, PG, PH, PT, QA, RO, RS, RU, SA, SC, SE, SG, SI, SK, SV, SY, TJ, TM, TT, UA, UG, US, UZ, WS, ZA, ZM, ZW
- 부속서 D (국제조사기관): 전체
- 부속서 SISA (국제조사기관(보충적 조사)): 전체
- 부속서 E (국제예비심사기관): AT, AU, CA, CL, CN, EA, EG, EP, ES, FI, IL, IN, JP, KR, PH, RU, SA, SE, SG, UA, US, XN, XV

### 연말 국제사무국 휴무일 및 국제공개 일정

#### 국제사무국 휴무일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국제사무국의 주말 외 휴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12월 25일(수)

2024년 12월 31일(화)

2025년 1월 1일(수)

이에 따라 국제사무국은 2024년 12월 26-27일(목-금) 및 30일(월)에 업무를 한 뒤 2025년 1월 2일(목)에 평소처럼 업무를 재개합니다.

PCT 정보 서비스(PCT Information Service), PCT 운영국 고객 지원과(PCT Operations Customer Support Section(PCT eServices)) 및 PCT 운영국(PCT Operations Division)의 운영 일자와 국제공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PCT 정보 서비스

PCT 정보 서비스는 2024년 12월 24일(화)부터 2025년 1월 1일(수)까지 운영이 중단되었다가, 2025년 1월 2일(목)에 업무를 재개합니다. 단, 연휴기간 동안 PCT 정보 서비스에 전화하면(전화번호: (+41-22) 338 83 38) 녹음된 안내음성을 통해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전화번호가 안내됩니다.

PCT 정보 서비스에서는 국제출원의 제출과 이후 PCT 국제단계에서 진행될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문의를 담당합니다(특정 출원 관련 문의는 PCT 운영국에 연락). 추가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ipo.int/pct/en/infoline.html>

### PCT 운영국 고객 지원과(PCT eServices) 및 PCT 운영국

연말 연휴기간 동안 PCT 운영국 고객 지원과(PCT eServices) 및 PCT 운영국의 운영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12월 25일(수):	휴무
2024년 12월 26일(목)부터	
2024년 12월 30일(월)까지:	평소대로 운영 (9:00-18:00(CET))
2024년 12월 31일(화) 및	
2025년 1월 1일(수):	휴무
2025년 1월 2일(목) 및 이후:	평소대로 운영 (9:00-18:00(CET))

추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PCT 운영국 고객 지원과(PCT eServices)는 출원의 전자적 준비, 제출 및 관리를 위한 서비스들과 관련된 문의를 담당합니다. 문의 대상 서비스들은 ePCT(<https://pct.wipo.int/ePCT/about-epct.xhtml?lang=ko>) 및 WIPO 우선권서류 전자적 이용 서비스(DAS)(<https://www.wipo.int/en/web/das>)입니다.
- PCT 운영국은 특정 출원과 관련된 문의에 응대합니다. PCT 운영국은 1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당 팀의 대표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찾으시려면 서식 PCT/IB/301을 확인하시거나 아래 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pct.wipo.int/ePCTExternal/pages/TeamLookup.xhtml?lang=ko>

### 국제공개 일정

PCT 출원은 다가오는 연휴기간 중 2024년 12월 26일(목) 및 2025년 1월 2일(목)에 평소대로 공개됩니다. 국제공개를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변동사항의 접수 마감기한은 변동없이 각각 2024년 12월 10일(화) 및 2024년 12월 17일(화), 자정(CET)입니다.

### 2024년 세계지식재산지표 보고서

2024년 세계지식재산지표 보고서(World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s 2024, 영문)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ipo.int/publications/en/details.jsp?id=4759>

해당 보고서는 전 세계의 지식재산(IP) 활동을 분석한 권위 있는 연례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국내 및 지역 IP 관청들과 WIPO로부터 집계한 2023년도 출원, 등록 및 갱신에 관한 통계를 토대로 특허, 실용신안, 상표, 산업디자인, 미생물, 식물품종 보호 및 지리적 표시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설문조사 데이터와 업계자료를 토대로 창조경제 현황을 조명합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 PR/2024/927(영어, 아랍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ipo.int/pressroom/en/articles/2024/article\\_0015.html](https://www.wipo.int/pressroom/en/articles/2024/article_0015.html)

페이지 오른쪽 상단에서 영어 외 다른 언어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신규/업데이트 PCT 자료

### PCT 국제기관 품질보고서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은, 각자 국제기관으로서의 업무 수행을 위해 시행한 품질관리제도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제출합니다<sup>2</sup>. 아래에서 2023년도 보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ipo.int/pct/en/quality/authorities.html>

### PCT 출원인 가이드 개선

PCT 출원인가이드의 여러 부속서들의 가독성을 개선하고 전반적 사용자 경험을 최적화하기 위해 후주/미주(endnote) 및 모든 부속서 내 관련 정보가 모든 체약국 및 관청들에 대해 각 부속서 텍스트 본문에 통합되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형식으로 자료 제공방식이 개선되고 검색 효율성이 증대되어 연관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됩니다. 또한, 부속서와 요약부분에 보통 파란색으로 강조되는 변동/업데이트 사항들이 전체 통합 내용에도 적용됩니다. e 가이드(eGuide, PCT 출원인가이드 전자버전)에서의 변동사항 강조방식에 관한 추가 세부사항은 PCT 뉴스레터 2023/09호 유용한 도움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wipo.int/export/sites/www/pct/ko/docs/newslett/2023/newslett-2023.pdf>).

여러분의 의견은 귀중합니다. PCT 사용자 및 관청께서는 [pct.guide@wipo.int](mailto:pct.guide@wipo.int)로 의견과 건의사항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저희가 지속적인 개선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 유용한 도움말

### 국제조사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선택안들

Q: PCT 출원을 하고 국제조사기관에서 국제조사보고서와 견해서를 받았습니다. 견해서에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해서 국내단계에서 특허보호 취득 가능성을 높이고 싶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국제조사는 관련 선행기술을 발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국제조사의 결과는 국제조사보고서(ISR)에 기재됩니다. 국제조사기관(ISA)은 또한 견해서(WOSA)를 작성하여 청구된 발명이 신규성, 진보성(비자명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지 여부에 대한 구속력이 없는 견해를 제공합니다. 국제조사는 출원인에게 관련 선행기술을 알려줌으로써

<sup>2</sup>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가이드라인 단락 21.31 및 21.32에 따름(<https://www.wipo.int/pct/en/texts/gdlines.html>).

출원인이, 국내단계에서 특허보호를 추구하기 전에 국제단계에서 모든 체약국에서 효력을 갖는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을 포함, 이후에 취할 모든 조치에 대해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합니다.

현 출원 단계에서 내가 가진 선택안들을 보다 잘 파악하고 PCT 시스템을 더욱 잘 활용하기 위해 고려하실 만한 일반적 방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 PCT 제 19 조에 따른 보정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 (수리관청이나 국제조사기관이 아닌) 국제사무국(IB)에 PCT 제 19 조에 따라 청구범위의 보정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보정된 청구범위 제출 시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보정된 청구범위는 국제사무국이 공개하며, 국제조사기관은 두 번째 국제조사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보정된 청구범위가 국제단계에서 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국제예비심사 청구 시 뿐입니다.

국내법에서 임시보호를 규정하는 지정국가에서의 임시보호를 위해 청구범위를 보다 잘 정의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 PCT 제 19 조에 따른 보정된 청구범위 제출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보정은 최초 출원 시 국제출원에 개시된 범위를 넘어서지 말아야 합니다. PCT 제 19 조에 따른 보정서 제출 기한은, PCT 규칙 46.1에 따라, 국제조사기관이 국제조사보고서를 송부한 날(즉, 발송일)로부터 2 개월 또는 우선일로부터 16 개월 중 더 늦게 만료되는 때입니다. 해당 기한의 만료 후에 국제사무국에 접수된 이러한 보정서는, 국제공개를 위한 기술적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 국제사무국에 도달한 경우 제때 접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PCT 제 19 조에 따른 보정서에는 아래 내용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 (i) 최초에 출원된 청구범위를 대체하는 청구범위 전체
- (ii) 출원 시 청구범위와 보정된 청구범위 간 차이를 기재한 서한. 해당 서한에는 최초에 출원된 출원의 특정 부분들(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에 대한 구체적 인용과 함께 청구범위 보정의 근거도 기재해야 합니다.
- (iii) (선택사항) 보정사항과 해당 보정사항으로 견해서에 제기된 문제들이 어떻게 극복되는지를 설명하는, PCT 제 19 조에 따른 설명서. 이러한 설명서는 공개됩니다.

(ii)의 서한과 (iii)의 설명서와 관련해 도움이 될 내용을 아래 PCT 뉴스레터 2010/09 호 유용한 도움말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ipo.int/edocs/pctndocs/en/2010/pct\\_news\\_2010\\_09.pdf](https://www.wipo.int/edocs/pctndocs/en/2010/pct_news_2010_09.pdf)

### PCT 제 2 장에 따른 국제예비심사청구<sup>3</sup>

또한 PCT 제 2 장에 따른 국제예비심사청구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PCT 규칙 53 과 연관해 PCT 제 31 조 참고).

PCT 규칙 54의 2에 따라, 제 2 장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제출 기한은 국제조사보고서가 출원인에게 송부된 날로부터 3 개월 또는 우선일로부터 22 개월 중 더 늦게 만료되는 때입니다.

<sup>3</sup> 우루과이가 기탁한 가입서에는 자국이 PCT 제 2 장에 기록되지 않는다는 유보가 포함되어, 2025년 1월 7일 또는 이날 이후에 제출된 국제출원에 대해 제출된 모든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우루과이는 자동 선택되지 않음.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제출 시 또는 국제예비심사 동안, PCT 제 34 조에 따라 청구범위 뿐만 아니라 발명의 설명 및/또는 도면에 대한 보정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견해서에 제기된 의견에 관한 주장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로써 해당 견해서에 공식적으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예비심사청구서는 관할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관련 수수료도 납부해야 합니다(PCT 수수료표(PCT Fee Tables) 표 2(Table II) 참고 (<http://www.wipo.int/pct/en/docs/fees.pdf>)). 국제예비심사의 결과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작성하는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IPRP II)에 반영되며, 또한 국제사무국에서 사본을 수령해 해당 선택관청들에 전달합니다.

국제예비심사청구를 고려하시면, 아래 두 개 PCT 뉴스레터 호의 유용한 도움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0/04 호: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제출 여부 결정 시 고려할 사항들 - 제 1 부 ([https://www.wipo.int/edocs/pctndocs/en/2010/pct\\_news\\_2010\\_04.pdf](https://www.wipo.int/edocs/pctndocs/en/2010/pct_news_2010_04.pdf), 8 내지 11 페이지)
- 2010/05 호: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제출 여부 결정 시 고려할 사항들 - 제 2 부 ([https://www.wipo.int/edocs/pctndocs/en/2010/pct\\_news\\_2010\\_05.pdf](https://www.wipo.int/edocs/pctndocs/en/2010/pct_news_2010_05.pdf), 8 내지 11 페이지)

###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에 대한 비공식 의견

국제예비심사는 청구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추가 비용 없이 비공식적으로 국제조사기관의 결론에 답변하기를 원하시면, 마찬가지로 국제조사기관이 아닌 국제사무국에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에 대한 비공식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의견은 국제단계에서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출원파일에 포함된 문서로서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때 WIPO의 PATENTSCOPE에서 공중에 공개됩니다. 그리고 나서 국내단계에서 해당 비공식 의견을 고려할 것인지, 어느 정도로 고려할 것인지는 지정관청에서 결정합니다.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에 대한 비공식 의견을 제출해도 이와는 별개로 국제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제예비심사 동안 해당 비공식 의견이 고려되기를 원하시면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직접 해당 비공식 의견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PCT 뉴스레터 2015/01 호 유용한 도움말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에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공식 의견 제출에 관한 내용”을 아래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ipo.int/edocs/pctndocs/en/2015/pct\\_news\\_2015\\_13.pdf](https://www.wipo.int/edocs/pctndocs/en/2015/pct_news_2015_13.pdf)

###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국내단계 진입 기다리기

국제조사기관에서 국제조사 결과를 받은 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출원의 국내단계 진입을 진행하기로 결정할 때까지 그냥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보통 국제조사보고서나 견해서에 출원의 특허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인용문헌이나 부정적인 견해가 없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보고서에 부정적인 인용이나 견해가 있다고 해도 이에 답변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국내단계에서 출원인들은 국내단계 진입에 필요한 단계들이 수행되는 때로부터 적어도 1개월 내에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을 보정할 추가 기회가 있습니다(PCT 제 28 조 및 제 41 조 및 규칙 52 및 78 중 적용되는 조항에 따라). 경우에 따라, 국제조사보고서와 견해서에

확인된 문제들을 국내단계에서 특정 지정관청들에 보정서를 제출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 기타 소식

다음 사항들에 대해서는 영문판(<http://www.wipo.int/pct/en/newslett/>)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조사기관(ISA)으로서의 유럽 특허청: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유럽 특허청(EPO) 간 시범시행**

### PCT 정보 업데이트

**GH** 가나 (이메일 및 인터넷 주소, 발명자의 이름 및 주소를 제공해야 하는 때)

**IR** 이란회교공화국 (위치 및 우편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ME** 몬테네그로 (관청명)

**PT** 포르투갈 (수수료)

**RU** 러시아연방 (수수료)

국제조사 관련 조사료 및 기타 수수료 (유럽 특허청(EPO),  
연방지식재산부(Rospatent)(러시아연방), 정정사항)

국제예비심사 관련 예비심사료 및 기타 수수료 (연방지식재산부(Rospatent)(러시아연방))

보충적 조사료 (연방지식재산부(Rospatent)(러시아연방))

### PCT에 관한 예정된 웨비나

#### 신규/업데이트 PCT 자료

일부 PCT 수수료 90% 감면 적용 가능성

유럽 변리사 시험(European Qualifying Examination)을 위한 자료